

군포도시공사 제8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5년 12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62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④ 채용 과정(입사지원서·면접)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응시자의 출신 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채용원칙)</p> <p>④ <u>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.</u> 다만,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7조(채용원칙)</p> <p>④ <u>채용 과정(입사지원서·면접)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응시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직무능력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u></p>

[참고사항]

□ 지방공공기관 인사·조직 운영 관련 지침 개정(2025.07.)

<p>○ <u>(신설)</u></p>	<p>○ <u>지방공사·공단의 장은 직원 채용 과정</u> <u>(입사지원서·면접)에서 편견이 개입되</u> <u>는 출신지,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</u> <u>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</u> <u>고, 실력(직무능력)을 평가하여 인재를</u> <u>채용하여야 함</u> ※ <u>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공기관 블라</u> <u>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따름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